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용어의 정의) (생 략)	제2조(용어의 정의) (현행과 같음)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“협력부처“라 함은 지식경제부장관(이하 “장관“)이 산업별 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협의하는 고용노동부 및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 부처를 말한다.	2. ---------- 산업통상부장관(이하 “장관“)이 ---------- -------- 교육부 ---------.
제4조(구성) ①·② (생 략)	제4조(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력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협의체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.	③ ----------. ---------- 어느 하나에 ---------.
1. 사망, 실종, 연락두절,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 기타 협의체에 참여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	1. -------- 연락두절로 인해 ----------.
2.·3. (생 략)	2.·3. (현행과 같음)
4. 기타 협의체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	4. 그 밖에 ----------

현 행	개 정 안
④ 협의체 위원이 사임하거나 제3항에 따라 해임되어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한다. ⑤ (생 략) ②·③ (생 략) 제7조(사무국) ① (생 략) ② 제1항에 따라 장관이 지정한 기관은 산업별 협의체의 일원이 되며, 해당 기관의 대표자는 산업별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다. ④·⑤ (생 략) <신 설>	④ ---------- 새로 ---------- 새로 시작한다. ⑤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7조(사무국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 구성원----------. ④·⑤ (현행과 같음) 제9조(재검토기한)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